

◆ 동작구공고 제2025-109호

신대방동 364-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재열람공고

1. 동작구공고 제2023-1110(2023.07.06.)호로 열람공고 한 “신대방동 364-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”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3일

동 작 구 청 장

1. 열람기간 : 2025. 1. 24. ~ 2. 6.(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)
2.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: 동작구청 도시계획과(장승배기로 161, 4층)
신대방2동 주민센터(신대방동 723)
3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사항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신대방동 364-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	동작구 신대방동 364-190번지 일대	-	증 28,035	28,035	-

※ 구역범위,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

4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)
5. 의견서 제출방법 : Fax 02-820-9798, e-mail lch0409@dongjak.go.kr
 - 서면 및 온라인(팩스·이메일) 또는 ‘서울도시계획포털’에서 의견서 제출 가능
 [서울시도시계획포털 사이트 및 QR코드]
 - 서울도시계획포털 : 도시관리계획(안) 의견청취 (seoul.go.kr)
 ※ ‘신대방동 364-19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’ 선택 후 주민의견서 작성(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)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(☎02-820-9734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